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27 선고 2021가단50818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수

담당변호사 김혜연

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서인

담당변호사 고오선

변 론 종 결 2022. 9. 6.

판 결 선 고 2022. 9. 27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8. 6. 1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3,522,3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3,522,3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 중 1/2 지분(이하 '이

사건 상속지분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8. 6. 1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3,530,865원¹⁾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2. 피고는 원고에게 23,530,865²⁾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대출금채권의 발생 및 양도

(1) C은 2017. 3. 29. 소외 D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로부터 (차량번호 1 생략) 중고차량의 구입을 위해 연체이자율을 연 27.9%로 정하여 2,660만 원을 대출받았고,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소외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,33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(이하 위 대출금을 '이 사건 대출금'이라고 한다).

(2) 원고는 2020. 5. 18.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21. 3. 16. "피고는 원고에게 44,192,608원 및 그중 24,404.401원에 대하여 2020. 12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"는 판결을 선고하였다(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586466).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상속재산분할협의 등

(1) C은 부 E(이하 '망인'이라고 한다)이 사망하자 2018. 6. 18.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고 한다)를 하였다.

(2) 이에 따라 2018. 6. 25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2018. 7. 30.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주식회사 F 명의의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(이하 이들 근저당권을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고 한다).

다. C의 재산 상태 등

(1)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재산 상태는 아래와 같다.

(가) 적극재산

1) 이 사건 상속지분 : 시가 6,000만 원(=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억 2,000만 원 × 1/2)

2) (차량번호 1 생략) : 시가 약 1,503만 원

3) (차량번호 2 생략) : 시가 불상(차량보다 낮음)

(나) 소극재산

1)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/2 : 1,497,695원(= 피담보채무액 2,995,390원 × 1/2)

2) 이 사건 대출금채무 : 원금 24,404,401원 및 금액 불상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

3) G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: 약 4,470,000원

4) H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: 약 7,791,000원

5) I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: 채무액 불상(위 차량에 채권가액 330만 원인 저당권 설정)

(2) 한편,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1억 6,250만 원이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1, 3, 5, 7, 9부터 13, 17호증, 을4, 14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

같다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평택시에 대한

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,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판단

가.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2020. 5. 18.보다 훨씬 전에 C이 일반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, 그로부터 1년이 지나

제기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본안에 대한 판단

(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(가)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소외 회사는 C에 대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, 이를 원고가 양수하였으므로,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(나) 다만, 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, 당해 피담보채무액이 그 재산의 가액 및 저당권의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‘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’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바(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

2016다263355 판결 등 참조),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(차량번호 1 생략) 차량에 채권가액 1,33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차량의 시가가 1,503만 원인이었으므로,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위 저당권으로 우선 변제받을

금액(1,330만 원)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,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대출원금 1,330만 원이 위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었다고 자인하는 한편 그때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

피보전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구하고 있으므로, 결국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았던 잔존 대출원금

11,104,401원(= 24,404,401원 - 1,330만 원) 및 이에 대한 2018. 6. 19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. 6. 21.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고, 그 금액은 23,522,376원3) 임이 계산상 분명하다.

(다)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C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

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는바(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),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반환을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,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(2) 사해행위의 성립

(가)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(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), 앞서 본 바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고 할 것이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.

(나) 이에 대하여 피고는 ❶ C과 피고는 피고가 그동안 망인을 전적으로 부양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 것인바,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, ❷ C과는 연락이 끊긴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써 그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다룬다.

살피건대, 먼저 ❶ 주장은,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(기여분 등이 반영되어 법정상속분이 수정된 것)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,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,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), 을6, 9, 10,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주민등록이 2001년 이후 몇 차례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말소되거나 거주불명등록이전 처리되었던 사실, 피고 부부가 2013년과 2014년 망인의 대출금채무 1,000만 원을 사실상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장례비용도 부담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, 또한 망인이 2006년 이후 공적연금소득 외의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, 피고는 망인 소유의 이

사건 부동산에서 20년 이상 무상으로 거주함으로써(을5호증) 장기간 별도의 주거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고 그 금액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,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피고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개연성도 있는 점 등의 다른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,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, ② 주장은, C와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처럼 C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C의 형편이 어렵다는 점이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써 그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(3) 취소 및 원상회복

(가)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,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,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,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,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). 한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(나) 살피건대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원고는 ‘㉠ 이 사건 상속지분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의 피담보채무액 중 이 사건 상속지분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잔액’과 ‘㉡ 자신의 피보전채권액’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, ㉠은 79,752,305원[= 이 사건 상속지분의 현재 시가 8,125만 원(=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억 6,250만 원 × 1/2) - 1,497,695원(기초사실 다.(1)(나)1)항 참조)]임이 계산상 분명하고, ㉡은

앞서 본 것처럼 23,522,376원이므로, 결국 원고는 둘 중 적은 금액인 23,522,376원을 한도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.

(다)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3,522,37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3,522,3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우정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강원도 강릉시 아파트 동

[도로명주소]

강원도 강릉시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구조 : 철근콘크리트조

면적 : 59.944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강원도 강릉시

대지권의 종류

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

19980분의 32.98

1) 청구취지에는 '23,305,865원'으로되어있으나, 2022. 6.

7.자준비서면(3쪽)에의하면오기인것으로보인다.

2) 각주1과같다.

3) $11,104,401\text{원} + 11,104,401\text{원} \times 27.9\% \times (4 + 3\text{일}/365\text{일})$ (원미만버림)